

■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

지구대기감시망 관측장비 기준

(제2조제1항제1호 관련)

1. 지구대기감시망은 다음 각 목의 관측장비 중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.
 - 가. 온실가스 측정기
 - 나. 반응가스 측정기
 - 다. 에어로졸 측정기
 - 라. 성층권 오존 측정기
 - 마. 자외선 측정기
 - 바. 대기복사 측정기
 - 사. 총대기침적 측정기
 - 아. 방사성 물질 측정기
2. 제1호 각 목의 관측장비를 제외한 관측장비는 각 지구대기감시망의 목적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